

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1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1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2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1. 17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(안)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0년도말 조성액 ㉠	2021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1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-㉣	증 감 ㉢=㉡-㉠
		수입㉢	지출㉣		
노 인 복 지 기 금	348,172	6,378	7,540	347,010	-1,162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기금 개요

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치한 기금임.

○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수입내역은 이자수입 637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하며
지출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276만원, 서울시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금 450만원
기금심의위원회수당 28만원으로 총 754만원입니다.

○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388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.]

□ 「노인복지법」 [시행 2020. 7. 8.] [법률 제17199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

제2조(기본이념)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.

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.

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. <개정 2016.7.18>

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.

<개정 2016.7.18>

제3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<개정 2016.7.18>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<개정 2016.7.18>
4. 그 밖의 수입금 <개정 2016.7.18>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
 2.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
 3. 전통문화 선양
 4.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
 5.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
 6.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
 7.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
 8.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
-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6.7.18>